

[서식 예] 친양자 입양 심판청구서(친모의 배우자 단독신청)

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

청	구	인	0 0 0(주	민등록번호 :		_)
			00시 00	구 ㅇㅇ길 ㅇ	000	번지	
			등록기준지	00시 001	면 O C	일 0부	천지
사 건	본	인	□ □ □(주	민등록번호 :		_)
			△ △ △(주	민등록번호 :		_)
			사건본인들	주소는 상 동	-		
			등록기준지	□□광역시 [□□구	□□길	□□번지

청 구 취 지

사건본인들을 청구인의 친양자로 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을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합니다.
- 2.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생모인 청구 외 @@@는 법률상 부부로서 ○○○○. ○. ○. 혼인한 이후로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○○번지 소재 주택에서 위 @@@, 사건본인 들 및 신청 외◎◎◎ (청구인과 위 @@@ 사이의 자녀)과 같이 살면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. 한편, 사건본인 들의 생부 망 @@@은 ○○○○. ○. ○. 사망하였습니다.



- 3. 그런데 사건본인들이 생모와 청구인의 결혼 이후 학교, 학원생활을 하면 서 동생과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거나, 재혼한 가정의 아이들 이라는 것이 친구들 사이에서 이야깃거리가 되지는 않을 까 하는 마음에 노심초사 하는 등 심한 정신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고, 청구인 내외도 같은 자식들과의 사이에 성과 본이 달라 각종 신고절차 시마다 재혼 한 것이 나타나 항상 마음이 무거웠습니다.
- 4. 이에, 청구인과 위 @@@가 심사숙고 한 끝에 청구인은 5년이상 혼인중이고, 친양자로 될 사건본인들은 모두 15세 미만이며, 생모인 신청 외@@@도 동의하고 있으며, 무엇보다도 사건본인들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청구인 부부와 사건본인 및 위 @@@ 모두를 위하여 좋겠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된 바 부디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5.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사항(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2 규정 사항)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.

첨 부 서 류

1. 청구 관련 사항 목록1통2. 가족관계증명서(사건본인)1통3. 혼인관계증명서(청구인)1통4. 주민등록등본(사건본인)1통5. 친양자 입양 동의서(친생모)1통7. 기본증명서(망 @@@)1통

(단, 2007. 12. 31.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1통)

8. 말소자초본(망 @@@) 1통

200

위 청구인 ㅇㅇㅇ

ㅇㅇ가정법원 귀중



<청구 관련 사항 목록>

구 분	내 용 (□에 √ 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.)					
	부 (父)	□ 동의함 □ 동의하지 아니함	사망(○○○○. ○. ○.) 동의할 수 없는 사정(「민법」제908조 의2제1항제3호 단서 참조)			
1. 친양자로 될 자		이 름	주 소			
의 친생부모가 친		망@@@	@@ @@			
양자 입양에 동의 하였는지 여부	모 (母)	□ 동의함 □ 동의하지 아니함	동의할 수 없는 사정(「민법」제908조 의2제1항제3호 단서 참조)			
		이름	주 소			
		@@@	@@AI @@			
2. 친양자로 될 자		이름	주 소			
에 대하여 친권을						
행사하는 자로서	있음					
부모 이외의 자의						
이름과 주소	□ 해당 없음					
3. 친양자로 될 자		이 름	주 소			
의 부모의 후견인	있음					
의 이름과 주소	□ 해당 없음					
4.「민법」제869조 에 의한 법정대리 인의 입양승낙	□ 승낙함 □ 승낙하지 아니함					



제출법원	· 친양자로 될 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	관 련 법 규	민법 제908조, 제1041조, 가사소 송법 2조1항 라류12호, 제44조6호			
신 청 인	· 공동신청(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) 청 인 · 단독신청(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)			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 관련 :	컴 뀨│	제908조의 2~8, 가사소송법 - 제1항라류, 제44조제4호			
비 용	·인지액: 사건본인 1명당 수입인지 5,000원(☞기시소송 및 비송시건수수료표) ·송달료: 청구인 수× 000원(1회송달료) ×10회분					
기 타	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며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소멸됨.					

제908조의2 (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) ① 친양자(친양자)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. 1.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. 다만,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2.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
- 3.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. 다만,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4.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
- 5.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
-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·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한다.



- 1.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. 다만,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.
- 2.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
- 3.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
-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, 친양자 입양의 동기, 양부모의 양육능력,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2.2.10] [[시행일 2013.7.1]]